

접수번호		FITI-M291-26-	검사자명	안진현 (서명)
검사항목	기준 및 결과 (일반안전요건)			판정
자유하강높이	자유하강높이는 3 000 mm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놀이기구 사용 유형이 '기립'에 해당됨 / 발로 지탱하는 부분의 높이 : _____ mm 놀이기구 사용 유형이 '앉음'에 해당됨 / 좌면의 높이 : _____ mm 놀이기구 사용 유형이 '매달림'에 해당됨 / 손으로 지탱하는 부분의 높이 : _____ mm 놀이기구 사용 유형이 '오르기'에 해당됨 / 손 지탱부 최대 높이에서 1 m를 뺀 높이 : _____ mm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공 간 과 연 역 의 결 정	자유공간	자유공간은 사용자가 쉽게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 놀이기구(예: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공중케이블, 흔들놀이기구 등)에 적용된다. 자유공간은 놀이기구 사용 시 사용자가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원통형 공간의 연속이며, 사용자가 움직이는 경로의 중심선을 따라 만들어진다는(그림 12 참조). 원통형 공간은 [그림 13]에 나타나 있으며, 그 치수는 <표 2>에 명시되어 있다. 비고 1 : 특정한 경우 자유공간의 치수가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기구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II ~ VI의 내용에 따른다. 비고 2 : 자유공간에는 강제된 움직임을 겪는 동안 사용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예를 들어, 나뭇가지, 로프, 가로대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용자를 담고 있거나 지탱하는 기구의 부품 또는 사용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사용자가 자유공간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기구의 부품인 경우에는 자유공간 내에 허용한다.(예: 소방관 지주와 플랫폼 등의 경우) ☐ 강제적인 움직임이 '기립'에 해당 / 반지름 1000 mm, 높이 1800mm의 원통공간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 ☐ 강제적인 움직임이 '기립'에 해당 / 반지름 1000 mm, 높이 1800mm의 원통공간에 장애물이 존재함 ☐ 강제적인 움직임이 '앉음'에 해당 / 반지름 1000 mm, 높이 1500mm의 원통공간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 ☐ 강제적인 움직임이 '앉음'에 해당 / 반지름 1000 mm, 높이 1500mm의 원통공간에 장애물이 존재함 ☐ 강제적인 움직임이 '매달림'에 해당 / 반지름 500 mm, 매달린위치에서 위로 300mm, 아래로1800mm의 원통공간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 ☐ 강제적인 움직임이 '매달림'에 해당 / 반지름 500 mm, 매달린위치에서 위로 300mm, 아래로1800mm의 원통공간에 장애물이 존재함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하강공간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하강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강공간의 범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 하였을 때 1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하강공간의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할 수 있다. - 벽면에 밀착하여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구가 완전히 폐쇄된 형태인 경우, 하강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놀이기구 사이에 하강공간의 겹침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에서는 하강공간의 겹침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유하강높이 : _____ mm 하강공간 : _____ mm ☐ 기구가 벽면에 밀착설치되어 하강공간이 줄어들었으며, 벽면에 돌출되거나 날카로운 장애물이 없음 ☐ 기구가 벽면에 밀착설치되어 하강공간이 줄어들었으며, 벽면에 돌출되거나 날카로운 장애물이 존재함 ☐ 강제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에서 하강공간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음 ☐ 강제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에서 하강공간의 겹침이 발생함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하강공간 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만한 장애물이 없음 ☐ 하강공간 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만한 장애물이 존재함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충격구역	충격구역의 치수는 [그림 18]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하강높이가 1500 mm 미만일 경우 충격구역의 범위는 최소 1500 mm이며, 자유하강높이가 증가할수록 충격구역의 범위도 넓어진다(높이>1.5m이면 충격구역=2/3높이+0.5m). 단, 울타리 높이가 1500 mm 이상 설치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00 mm 미만의 최대자유하강높이를 갖는 기구의 충격구역은 최소 1000 mm 이상을 적용하며, 자유하강높이가 발생하지 않는 기구에 대해서는 충격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충격구역 내에는 장애물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 ☐ 충격구역 내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 ☐ 충격구역 내 장애물이 존재함 (장애물 요소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충격흡수용표면재	4.4.1.2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심한 패임 현상이 없어야 한다. 4.4.1.3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상해를 줄만한 이물질(유리, 돌부리, 조개껍질 등)이 없어야 하며, 놀이시설 안에는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 4.4.1.4 고무바닥재 및 포설 도포 바닥재의 경우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밀하고 단단하여야 한다. 4.4.1.5 놀이기구의 기둥 기초부(몸체 등)등은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고정 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 충격흡수용표면재에 심한 패임현상이 없음 / ☐ 충격흡수용표면재에 심한 패임현상이 있음 ☐ 충격흡수용표면재에 상해를 줄만한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음 ☐ 충격흡수용표면재에 상해를 줄만한 이물질이 존재함 ☐ 고무바닥재 및 포설도포바닥재가 아님 ☐ (고무,포설 인경유) 바닥재의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음 ☐ (고무,포설 인경유) 바닥재의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함 ☐ 놀이기구의 기둥 기초부가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음 ☐ 놀이기구의 기둥 기초부가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됨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충격구역 표면처리	자유하강높이가 600 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몸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충격흡수표면의 최대하강높이는 놀이기구의 자유하강높이와 동등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 자유하강높이가 600 mm 이상인 놀이기구에 해당 ☐ 강제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놀이기구에 해당 ☐ 자유하강높이가 600 mm 이상인 부분 및 강제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놀이기구의 충격구역에 충격흡수표면처리가 되어있음 ☐ 자유하강높이가 600 mm 이상인 부분 및 강제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놀이기구의 충격구역에 충격흡수표면처리가 되어있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 m 이상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의 상부에 적합한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 m 이하 ☐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 m 이상 (플랫폼 사이 높이 : _____ mm) ☐ 낮은 위치의 플랫폼 상부에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됨 ☐ 낮은 위치의 플랫폼 상부에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되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충격흡수용표면재에 대한 HIC측정	모래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모래량 및 균기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유하강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바닥구역이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각각 적용한다.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된 HIC 값은 1000 이하이어야 한다. 충격구역의 바닥재 종류 : ☐ 고무바닥재, ☐ 포설도포바닥재, ☐ 모래, ☐ 기타바닥재(_____) 측정 높이(최대 자유하강높이를 포함한 추락가능한 부분의 높이) : _____ mm, _____ mm, _____ mm 측정된 최대 HIC 값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_____ / _____)

<다음페이지 계속>

접수번호		FITI-M291-26-	검사자명	안 진 현 (서명)
검사항목		기준 및 결과 (일반안전요건)		판정
엮매임에 대한 번호	일반	엮매임 개구부는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 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 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없음 ☐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 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존재함 ☐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 할 수 있음 / ☐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 할 수 없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구속된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는 적절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서 있는 면으로부터 600 mm 이상 1800m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한 개구부는 머리모양의 탐침봉 D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탐침봉 C와 E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 울타리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구부는 탐침봉 C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개구부의 크기가 적절하여, 엮매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속된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음 ☐ 엮매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속된 개구부가 존재함 (개구부의 높이 : mm / 통과하는 탐침봉 : ☐ 탐침봉C ☐ 탐침봉D ☐ 탐침봉E) (개구부의 높이 : mm / 통과하는 탐침봉 : ☐ 탐침봉C ☐ 탐침봉D ☐ 탐침봉E) (개구부의 높이 : mm / 통과하는 탐침봉 : ☐ 탐침봉C ☐ 탐침봉D ☐ 탐침봉E) ☐ 울타리 구성요소에서 탐침봉C가 통과하는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음 ☐ 울타리 구성요소에서 탐침봉C가 통과하는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V형개구부 및 부분적인 개구부	서 있는 위치로부터 600 mm 이상 1800mm 이하에 위치한 V형 개구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5.3.1 수직방향인 경우, 목 형상 부분이 개구부에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판정을 형판의 머리형상보다 넓어야 한다. 4.5.3.2 수평 방향인 경우, 목 형상 부분이 개구부에 완전히 잠기지 않거나, 머리 형상 말단 부분이 개구부의 기저부에 닿는다면, 개구부의 깊이는 형판의 A부분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개구부의 깊이가 형판의 A부분보다 더 크다면, 형판의 어깨 형상의 부분까지 삽입이 되거나 230 mm 큰 탐침봉이 삽입되어야 한다. ☐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엮매임이 발생할 수 있는 V형개구부 및 부분적인개구부가 존재하지 않음. ☐ 수직방향으로 V형개구부 및 부분적인 개구부가 존재하며, 목 형상 부분이 완전히 잠기며, 판정용 형판의 머리형상보다 좁음 (부위 : 개구부의 높이 : mm) (부위 : 개구부의 높이 : mm) (부위 : 개구부의 높이 : mm) ☐ 수직방향으로 V형개구부 및 부분적인 개구부가 존재하며, 목 형상 부분이 개구부에 완전히 잠기며 개구부의 깊이가 형판의 A부분보다 크며, 형판의 어깨 형상 부분까지 삽입되지 않음 (부위 : 개구부의 높이 : mm) (부위 : 개구부의 높이 : mm) (부위 : 개구부의 높이 : mm)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발 엮매임	어린이가 건너다 뛰어다닐 수 있는 표면의 발 또는 다리의 엮매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 진행방향과 평행한 30 mm 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45° 이상 경사진 표면에 대해서는 발 또는 다리의 엮매임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 진행방향과 평행한 30 mm 이상의 틈이 존재하지 않음 ☐ 주 진행방향과 평행한 30 mm 이상의 틈이 존재함 (☐ 45° 이상 경사진 표면에 해당 / ☐ 45° 이상 경사진 표면에 해당되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손가락 엮매임	자유공간 내 또는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충격구역 위 1000 mm 이상의 위치에 가장자리가 있는 개구부는 손가락 엮매임을 방지하기 위해 8~25 mm의 크기가 아니어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은 최소 12 m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튜브나 파이프 등은 막음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사각형 내 또는 수직/수평 길이 1000 mm 이상의 위치에 가장자리가 있는 개구부 부위 : 통과하는 탐침봉 : ☐ 8 mm 손가락 막대 ☐ 25 mm 손가락 막대 부위 : 통과하는 탐침봉 : ☐ 8 mm 손가락 막대 ☐ 25 mm 손가락 막대 부위 : 통과하는 탐침봉 : ☐ 8 mm 손가락 막대 ☐ 25 mm 손가락 막대 부위 : 통과하는 탐침봉 : ☐ 8 mm 손가락 막대 ☐ 25 mm 손가락 막대 * 움직이는 부분 부위 : ☐ 8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하지 않음 ☐ 8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함 ☐ 12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하지 않음 ☐ 12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함 부위 : ☐ 8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하지 않음 ☐ 8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함 ☐ 12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하지 않음 ☐ 12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함 부위 : ☐ 8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하지 않음 ☐ 8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함 ☐ 12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하지 않음 ☐ 12 mm 손가락 막대가 통과함 * 튜브나 파이프 등 ☐ 튜브나 파이프 등은 막음처리가 되어 있음 ☐ 튜브나 파이프 등은 막음처리가 되어있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옷 엮매임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소방관 지주, 미끄럼틀이나 회전놀이기구 등은 옷 엮매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위 : ☐ 옷 엮매임이 발생함 ☐ 옷 엮매임이 발생하지 않음 부위 : ☐ 옷 엮매임이 발생함 ☐ 옷 엮매임이 발생하지 않음 부위 : ☐ 옷 엮매임이 발생함 ☐ 옷 엮매임이 발생하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연결장치		모든 연결장치의 결합상태는 견고하여야 하며 물고임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연결장치의 결합상태가 견고함 ☐ 연결장치의 결합상태가 견고하지 않음 ☐ 연결장치에 물고임이 없음 ☐ 연결장치 물고임이 존재함 ☐ 연결장치에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등이 없음 ☐ 연결장치에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등이 존재함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기구의 마감처리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반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 놀이기구 표면에 갈라지거나 거친부분이 없음 ☐ 놀이기구 표면에 갈라지거나 거친부분이 존재함 (부위 : _____) ☐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고, 곡률반경 3 mm 이상임 ☐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가 존재하거나 곡률반경 3 mm 미만임 (부위 : _____) ☐ 실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실내놀이기구의 결합부위가 안전폼 등으로 감싸져 있음 ☐ 실내놀이기구의 결합부위가 안전폼 등으로 감싸져 있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

<다음페이지 계속>

접수번호		FITI-M291-26-	검사자명	안 진 현 (서명)
검사항목		기준 및 결과 (일반안전요건)		판정
기 구 의 마 감 처 리	목재	목재는 쪼개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썩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도장이 벗겨진 곳이 없어야 한다. 목재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캡이나 다리를 세운 경우 캡이나 다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 목재에 쪼개진 부위, 거친 부분, 썩은 부분, 파손된 부분이 관찰되지 않음 ☐ 목재에 쪼개진 부위, 거친 부분, 썩은 부분, 파손된 부분이 존재함 (부위 : _____) ☐ 도장이 벗겨진 곳이 없음 ☐ 도장이 벗겨진 곳이 존재함 (부위 : _____) ☐ 지면에 닿지 않도록 캡이나 다리를 설치하지 않음 ☐ 캡이나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캡 또는 다리의 파손이 관찰되지 않음 ☐ 캡이나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캡 또는 다리의 파손이 관찰됨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금속	금속재질은 도장처리가 되어 있으며, 녹이 발생되거나 도장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갈라짐, 휘어짐 등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 도장처리가 되어있음 ☐ 도장처리가 되어있지 않음 ☐ 녹이 발생하거나 도장의 벗겨짐이 관찰되지 않음 ☐ 녹이 발생하거나 도장의 벗겨진 부분이 존재함 (부위 : _____) ☐ 갈라짐, 휘어짐 등 파손이 없음 ☐ 갈라짐, 휘어진 부위가 존재함 (부위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합성수지	변색 또는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 변색 또는 심한 마모가 관찰되지 않음 ☐ 변색 또는 마모가 심한 부분이 존재함 (부위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네트 및 볼트	모든 놀이기구의 네트와 볼트는 단단히 조여져 있어야 하며,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구에 접근 가능한 모든 부분에 있는 돌출된 나사산은 영구히 덮여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둥근 지붕형태를 한 네트). 8 mm 미만으로 돌출된 네트 및 볼트 머리는 꺼끌꺼끌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모든 용접 부위는 부드럽게 연마되어야 한다. ☐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음 ☐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존재함 ☐ 돌출된 나사산이 존재하지 않음(영구히 덮여있음) ☐ 돌출된 나사산이 존재함 ☐ 8mm미만으로 돌출된 네트 및 볼트머리에 꺼끌꺼끌한 부분이 없으며, 용접부위가 부드럽게 연마됨 ☐ 8mm미만으로 돌출된 네트 및 볼트머리에 꺼끌꺼끌한 부분이 존재하며, 용접부위가 부드럽게 연마되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충격흡수용표면재	놀이시설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기구, 바닥 또는 벽 등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어린이활동공간감사를 받아야 하며, 제1부, I, 비고 7에서 정한 방염검사(실외 설치 놀이기구는 제외)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외놀이터에 해당(해당없음) ☐ 방염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이 사용됨 ☐ 방염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이 사용되지 않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구동부분		기구의 구동부분은 심하게 마모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한다. 큰 충격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구의 구동부분과 비구동부분 사이에는 전단지점과 짓눌림 지점이 없어야 한다. 기구를 사용하는 동안 변동되는 구동부분과 비구동부분 사이의 틈은 어느 위치에서나 최소 12 mm이어야 한다. 또한 구동부품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몸 전체의 엮매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400 mm 이상의 지면간격을 두어야 한다. ☐ 심하게 마모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음 ☐ 심하게 마모되거나 파손된 곳이 존재함 ☐ 구동부와 비구동부분 사이에 전단지점과 짓눌림 지점이 없음 (최소 12 mm 틈이 확보됨) ☐ 구동부와 비구동부분 사이에 전단지점과 짓눌림 지점이 존재함 (최소 12 mm의 틈이 확보되지 않음) ☐ 구동부품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몸 전체의 엮매임이 발생하지 않음 ☐ 구동부품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몸 전체의 엮매임이 발생함 (지면간격 : _____ mm)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기초물		기초물은 놀이시설 사용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기초볼트 체결부에 물고임 등 배수불량이 없어야 한다. ☐ 사용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설치됨 ☐ 사용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음 ☐ 기초볼트 체결부에 배수불량이 없음 ☐ 기초볼트 체결부에 배수불량이 존재함 성근 입자로 마감된 표면(예: 모래)에 기초를 세울 때에는 다음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에 따른다. - 기구의 주춧대, 토대 및 고정 장치를 등은 놀이시설 표면 밑으로 최소한 400 mm 들어가야 한다(그림 23 참조). - (기초의 뒷부분이 [그림 24]와 같다면) 놀이시설 표면 밑으로 최소 200 mm 들어간다. - 놀이기구에 의해 완전히 덮여 있어야 한다(그림 25 참조). ☐ 해당없음 (성근 입자로 마감된 표면이 아님) ☐ 기구의 주춧대, 토대가 [그림23(각진 형태)]의 형태에 해당 / 기초물의 깊이 : _____ mm ☐ 기구의 주춧대, 토대가 [그림24(굴곡진 형태)]의 형태에 해당 / 기초물의 깊이 : _____ mm ☐ 기구의 주춧대, 토대가 놀이기구에 의해 완전히 덮여 있음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정기시설검사 추가 요구사항		☐ 날카로움 또는 돌출부가 존재하지 않음 ☐ 날카로움 또는 돌출부가 존재함 (부위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 심한 녹이 없으며, 파손된 곳이 없음 ☐ 심한 녹 및 파손된 부위가 존재함 (부위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 금속부에 도장면이 심하게 벗겨지지 않음 ☐ 도장이 심하게 벗겨진 금속부가 존재함 (부위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의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음 ☐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의 탈락 또는 마모가 관찰됨 (부위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 기동 기초부의 노출이 없으며, 고정 상태가 견고함 ☐ 기동 기초부의 노출 또는 고정상태가 견고하지 않음 (부위 : _____)		☐ 합격 ☐ 불합격 ☐ 해당없음

(/)